

논문심사규정

1993. 5. 17 제정 / 2010. 2. 18 개정

1.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. 본 학회지의 논문종류는 연구논문(Research Paper), 특집논문(Review Paper), 속보(Communication and Notes), 연구교신 (Comments and Reply)이 있다.
2. 논문의 심사는 3 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.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,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.
3.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집위원회의 담당 위원이 “게재가”, “수정 후 게재가”, “수정 후 재심” 및 “게재불가”로 판정한다.
 - (1) “게재가”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.
 - (2) “수정 후 게재가”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저자가 원고를 수정한 후 편집이사의 확인을 거쳐 게재한다.
 - (3) “수정 후 재심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저자가 원고를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 의하여 재심을 받는다.
 - (4) “게재불가”로 판정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, 동일한 내용으로는 재심사 및 게재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
 - (5) 저자에게 심사결과가 통보된 후 90 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된 논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“게재불가”로 판정한다.
4.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“게재불가”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.
 - (1)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
 - (2) 저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
 - (3)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5. 심사 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.
6. 기타, 논문이 논문 투고규정에 맞지 않다고 편집이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7. 원고를 영어로 작성하여 투고 할 경우에는 본 학회지의 영어논문 투고규정에 따른다.
8.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.
9.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30 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, 판정 결과와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.
10.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받은 후 30 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당 편집위원회 위원은 심사의뢰를 취소하고, 다른 심사의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.
11. 저자는 심사 완료된 원고에 대하여 수정된 최종 원고 및 한글 파일 또는 MS word 파일을 본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2. 투고된 논문 원고에 대하여 심사의견서에 따른 일체의 수정과 답변은 저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1. 제정 일자 : 1993 년 5 월 17 일
2. 1 회 개정일자 : 1999 년 1 월 20 일
3. 2 회 개정일자 : 2010 년 2 월 18 일
4. 본 규정은 2010 년 2 월 18 일부터 적용한다.